

포커스②

복사기·프린터 EPR품목 포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입법 예고

한국광학기기협회, EPR품목 개정안 관련 환경부에 의견서 제출

“

복사기·프린터 등 제품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놓고 한국광학기기협회·업계와 환경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 환경부는 복사기·프린터 등 사무기기를 포함한 7개의 전자 및 정보기기 제품을 오는 2006년부터 EPR 품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법안을 확정, 이르면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광학기기협회와 복사기·프린터 업체들은 프린터와 복사기를 판매업자의 폐기물 회수의무대상 제품에서 제외시켜 줄 것과 부득이 추가될 경우 시행시기를 최소 3년 이상 늦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재활용촉진법 입법과정에서 진통을 빚을 전망이다.

●●● 정리 | 편집부 |

”

복사기·프린터 등 사무기기를 포함한 7개의 전자 및 정보기기 제품을 오는 2006년부터 EPR 품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한국광학기기협회와 사무기기 업계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7일 프린터 △프린터, 복사기 등 전기·전자제품을 재질·구조 개선 대상제품에 추가 △프린터, 복사기 등 재활용의무대상품목에 추가되는 전기·전자제품을 판매업자의 폐기물 회수의무대상 제품으로 함 △프린터, 복사기의 개정규정은 2006년 △팩시밀리 등은 2007년부터 EPR품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같은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법안을 확정하는 대로 이르면 10월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한국광학기기협회에서는 복사기 업체 3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7월 27일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한국광학기기협회와 업체들은 ‘프린터, 복사기 등 재활용의무대상품목에 추가되는 전기·전자제품을 판매업자의 폐기물 회수의무대상 제품으로 한다’는 개정항목에서 프린터, 복사기를 제외하여 줄 것과, 부득이 추가될

경우 시행시기를 2008년 또는 2009년으로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업계에 따르면 프린터 · 복사기 · 팩시밀리는 재활용 대행업체가 잘 구축되어 있지 못하므로 재활용 대행업체가 구축된 후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이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3년에서 5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복사기 · 프린터 · 팩시밀리 등은 의무재활용 목표치 산정을 위한 기준점이나 재활용분담금 산정을 위한 정확한 기준점이 미비하므로 관련 기업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기준설정후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업계에서는 국내에 EPR제도 도입이 시작단계이므로 도입성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한 후 품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 또한 재활용 의무량 산정기준을 과거 2년 전 출고량에서 당해년도 출고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전년도 또는 산정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프린터 및 복사기의 EPR품목 추가에 대해 3년 유예기간 필요

업계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환경유해성 측면에서 복사기 재질구성 분석결과 철류가 약 32%, 수지류가 48%를 차지하는 등 환경 유해성이 극히 미약하다는 것. 프린터

역시 재질 구성 분석 결과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나 철류가 약 77%를 차지하고 있어 환경유해성은 극히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시되고 있는 토너의 비율은 0.88%로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된 프린터는 토너잔류량이 1/100 정도로 예측되므로 토너의 양은 극히 미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복사기, 프린터 등의 중고기기의 경우는 군소 재생업체들이 소비자로부터 유상 회수하여 재판매 · 임대 또는 부품을 재활용하고 사용한 토너 카트리지를 역시 재충전하여 재판매되는 등 모두 영리적으로 재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산자에게 의무적으로 회수하게 한다면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조직 확대는 물론 중간 재생업체들로부터 재판매입이라는 기형적인 유통구조를 유발시켜 중소기업체들의 경영압박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복사기, 프린터 등 사무기기 생산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 · 중견업체로서 자체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와 능력이 부족하므로 시행할 경우 재활용 대행업체에 위탁해야하며 분담금 부과 등 복잡한 절차 및 비용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결국은 품목지정에 대한 대책마련은 물론 재활용 기반구축 등 준비시기까지 유예기간을 달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광학세계’ 정기구독 안내

한국광학기기협회에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광학세계’ 지를 정기 구독하고자 하는 분은 1년 간 책자 우송료 1만2천원을 지불하시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정기구독 기간중 주소 및 전화 번호가 변경될 경우 본 협회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084-01-0156-856

▶▶예금주 : 한국광학기기협회

• 연락처 : 「광학세계」 편집부

• 주 소 : (137-842)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12-5
백산커뮤니티빌딩 4층 한국광학기기협회

• 전 화 : (02)581-2321 • 팩스 : (02)588-7869 • 이메일 : pjy@koia.or.kr